

일본, 가족경영협정제도 개요

강 혜 정*

농가내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와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농가 경영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원들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것이 가족경영협정이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농가의 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4,521가구이며, 체결농가 중 73%는 인정농업인이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농업 경영방침, 노동시간과 휴일, 농업노동 및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 노동보수(일급·월급) 등을 포함한다.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1. 일본 가족경영협정 제도의 의의

가족구성원 성별을 불문하고 의욕을 가지며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각 가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와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의욕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ng@krei.re.kr 02-3299-4286

위해서 농업경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원들이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것이 ‘가족경영협정’이다.

가족경영협정은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의욕이나 경영의욕을 높이며 원활한 경영계승을 위해서 농업경영의 취업조건과 환경개선, 농업경영의 계승과 상속, 일상생활의 역할과 책임분담 등을 결정한다.

가족경영협정은 영농 후계자의 경제 및 정신적 자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안정된 농업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 내 여성의 농업노동은 물론 농업경영 관리활동이나 가사, 육아, 노인수발 등의 노동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영 의사결정 참여,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개별 농업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또는 영농승계자)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중심의 농가형태로 바뀌면서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2. 일본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실태

일본 농가의 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4,521가구로 2005년도에 비해 2,401가구, 즉 7.5%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34,521가구 중 73%는 인정농업인이다.

표 1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수 추이

단위: 가구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협정 체결 농가	5,335	7,205	9,947	12,030	14,777	17,200	21,575	25,151	28,734	32,120	34,521

자료 : 농림수산성 부인·생활과(1999년), 보급과(2000~2003년), 보급·여성과(여성·취농과)(2004~2006년)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표 2 협정 체결 농가의 구성 비율

	협정농가수	비율
전체	34,521	100%
인정농업인	25,117	73%
법인	647	2%
기타	8,757	25%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경영협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족이 의논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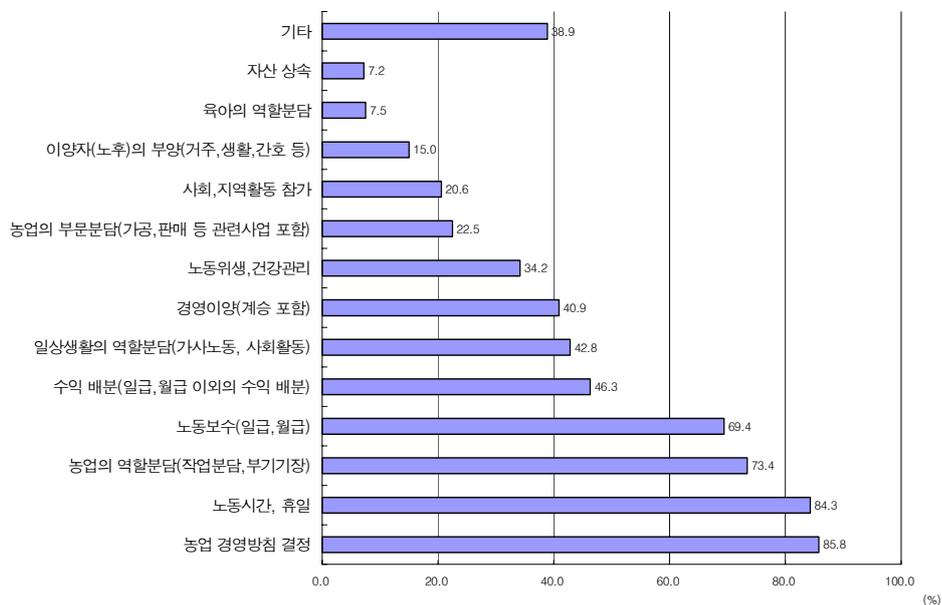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① 노동보수, 휴일, 역할분담, 작부계획, 소득목표, 경영이양 등 농업경영의 현상과 목표, ② 가사, 육아, 노인수발의 역할분담, 공동가계비 지출방법, 주거생활방법, 생활목표 등 일상생활의 현상과 목표, ③ 가족의 생각이나 요구 및 과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협약 내용은 매년 혹은 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정하거나, 혹은 후계자의 취농이나 결혼, 경영주의 경영이양, 가족의 사회참여, 경영내용개선 등이 있다면 가족 전원이 의논하고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각 농가 실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 경영방침 결정’이 8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간·휴일’이 84.3%, ‘농업에서의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이 73.4%, ‘노동보수(일급·월

급)'이 69.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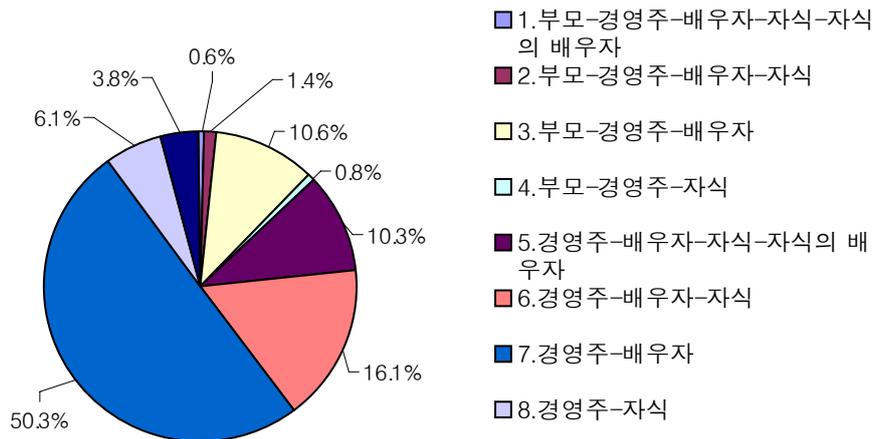
협정을 체결한 가족원은 경영주,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경영주의 부, 모 등이 될 수 있다. 즉, ①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 ②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 ③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후계자+후계자의 배우자, ④ 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경영자의 부+ 경영자의 모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중 경영주-배우자 사이에서의 가족경영협정 체결이 가장 많으며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가족경영협정 계약내용 (복수응답)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그림 2 가족경영협정 체결 대상 범위



자료: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조사 「가족경영협정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경영협정 체결 순서는, ① 농업경영 현상이나 과제, 가족의 요망 등을 가족끼리 의논 또는 농업위원회나 농업개량보급센터 등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조언, ② 의논하여 합의된 내용에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협약서를 작성, ③ 문서화된 협약서를 조인하는 순이다.

협약 조인에 관해서는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센터, 농협 등의 담당자에게 제3자로 입회하도록 부탁하여 조인을 받는 방법, 개개인의 가족단위로 협약 내용을 조인하는 방법,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다른 농가들과 함께 합동으로 조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입회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체결 시 농업위원회 등 관계자가 입회인이 되면 사회적 인지를 얻을 수 있고 협약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다.

(1) 인정농업인제도: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약 체결 등을 요건으로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인정농업인의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경영자인 여성농업인, 농업후계자도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

(2) 농업인연금: 농업인연금의 피보험자이면서 인정농업인, 청색신고자¹⁾ 등 의욕 있는 경영주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가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기본 보험료(20,000엔)에 대하여 국고에서 일정비율을 보조한다.

(3) 농업개량자금: 개별 농업경영에서 가공분야, 신작물분야, 신기술에 도전하려는 배우자가 농업개량자금을 빌리려고 할 때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약 보급 초기에는 협약 자체에 대해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체결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 설명,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업개량보급센터의 담당자의 꾸준한 설득과 교육 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활한 가족경영협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부중심의 의식교육과 함께 이미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한 선도농가의 홍보 및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21세기의 농업·농촌, 제4권 「일본농촌의 주체형성」의 제 2절 “가족경영협정과 농촌여성 창업”에서 발췌정리

1) 신고 납세제도의 하나로써 정부(세무서)가 규정한 장부를 갖추고 청색용지에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는 제도이다.